

의안번호	제 213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268 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발 의 자	민경환 의원외 7인
발의연월일	2008년 2월 14일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민경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
----------	-----

발의연월일 : 2008. 2. 14.  
 발 의 자 : 민경환·이영복·정운숙  
 박종갑·이규완·이대원  
 이범윤·권광택(8인)

## 1. 제안이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정책을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시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 나.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5조).
  -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두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 규칙으로 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단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 의식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정함(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 2) 여성발전기본법 제4조, 제5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시행계획 수립 시 예산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4. “여성정책”이라 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

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둔다.

- ② 제1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업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 어 작업의 환경정비 사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출산농가도우미 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영농도우미지원 확대 강화
2.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가사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문화 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단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고 여성 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발췌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어업, 농촌·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업 및 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목의 핵심정책과제

가. 농어업경영능력향상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

③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①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 여성발전기본법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6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